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본 연합회 •

미국

FTC, 기업결합에 관한 보고서 발간

연방거래위원회 경제국은 “Transparency at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he Horizontal Merger Review Process, 1996–2003”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방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한 이 보고서에는 위원회가 2004년에 행한 수평적 기업결합 조사자료와 위원회에서 1996년에서 2003년간 행한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기업결합 검토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번에 검토된 지난 8년간의 법집행이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장집중 기반 모델과 추가적 요소들을 고려하는 모델들을 이용하여 연방거래위원회가 2004년 한 해 동안 분석한 데이터들도 추가했다. 또한 위원

회의 자료수집 과정도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이 제공하는 평가에 의하면, 시장의 구조뿐만 아니라 확인된 소비자의 불만, 시장진입 가능성 및 당해 기업결합이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서류들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 2. 3. 연방거래위원회

DUPONT사, 카르텔 참가에 대한 벌금 8천 4백만 달러 부과 받아

DuPont Dow Elastomers L.L.C.(이하 DuPont)는 타이어, 접착제, 방수천, 가구 및 신발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고무의 가격을 고정하는 담합에 참가한 혐의를 인정하고 8천 4백만 달러의 형사적 벌금을 물기로 하는 데에 합의했다.

일명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미국에서 한 해에 약 3억 7천만 달러가 판매되

고 있다. DuPont은 클로로프렌 고무를 네오프렌(neoprene)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합성고무 산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가격고정 담합을 적발한 첫 번째 케이스이다.

DuPont은 지난 1996년에 E.I. du Pont de Nemours & Company와 The Dow Chemical Company Dow Elastomers가 델라웨어에 설립한 회사이다. 이 회사가 지난 1999년 8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미국 및 기타 국가들에서 판매되는 클로로프렌 고무의 가격을 경쟁사들과 담합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DuPont은 향후 정부의 합성고무 시장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사건은 연방법무부가 국제적인 가격고정 카르텔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밝혔다. 그는 또한 “이러한 유형의 카르텔은 수많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며, 담합

참가자들에게는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위험을 주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DuPont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기타 국가들에서 판매되는 클로로프렌 고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회합을 하였고, 이 회합에서 가격고정에 합의하였으며, 카르텔 참가자들의 합의를 이행·유지시키기 위한 회합에 참가하였고, 합의된 바에 따라 가격을 공표하였으며, 참가자들간에 고무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번 사건은 작년에 행해졌던 고무화학 및 기타 합성고무 등과 같은 고무 관련 산업에 대한 일련의 조사에 대한 후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고 Scott Hammond 독점금지국 형사집행부장은 말했다.

2005. 1. 19. 연방법무부

FTC, CB&I사의 자산인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연방거래위원회는 Chicago Bridge & Iron Company(이하 CB&I)가 Pitt-Des Moines, Inc.(이하 PDM)의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CB&I는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던 2001년 2월에 PDM의 자산인수를 완료한 바 있다. Orson Swindle 위원이 서명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건 자산인수는 미국내 4개의 관련 상품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이 클레이튼법 제7조(다른 사업자에 대한 주식취득)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결합 이전 상태로 경쟁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CB&I에게 관련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분리되고 독립된 부문으로 나누어 유지할 것과 6개월 이내에 이 부문 중 하나를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CB&I는 세계적인 규모의 엔지니어링 및 건축회사이고, PDM 역시 다양화된 엔지니어링 및 건축회사이자 다양한 탄소강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다. 2001년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들은 물탱크 및 기타 특수한 강판 구조물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 위원회는 이들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이러한 부문들에서 특히 LNG 저장탱크, LPG 저저장탱크 및 LIN/LON 저저장탱크 등의 시장에서 심각할 정도로 경쟁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의견에 따르면, “이 기업결합은 4개의 관련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자의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허용되면 각각의 시장들은 독점 내지는 거의 독점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 1. 6. 연방거래위원회

Majoras와 Leibowitz,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승인됨

2004년 11월 21일 일요일, 미국 상원은 Deborah Platt Majoras씨와 Jon Leibowitz씨의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지명을 전회 일치로 승인하였다. Majoras씨는 2001년 9월 26일부터 7년간의 임기가 확정되었다. 또한 연이어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한다. Leibowitz씨는 2003년 9월 26일부터 7년간의 임기가 확정되었다.

2004. 11. 22. 미 연방거래위원회 발표문

E U

EU위원회, Airbus와 Sita의 조인트 벤처 승인

EU위원회는 EU 기업결합규칙에 따라서 Airbus 그룹(프랑스)과 SITA(네덜란드)사와의 조인트벤처를 승인했다. OnAir라고 불리는 이 조인트벤처는 상업용 비행기 내에서 전화, 단문메세지, 전자메일 등의 통신수단들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인트벤처가 관련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OnAir사는 SITA와 Airbus가 지배하는 회사지만 완전히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내 좌석에 부착

된 전화, 단문메시지 서비스, 전자메일, 개인용 가상네트워크(VPN)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이미 모회사 중의 하나인 SITA가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내 좌석용 전화, 기내용 단문메시지, 기내용 전자메일 시장에서 기업결합 후에도 반경쟁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며, 현재 시장 형성중에 있는 기내 VPN이나 인터넷 접속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OnAir 이외에도 다른 사업자들이 이미 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할 수 있다는 점과, 형성중인 시장에도 제3자가 서비스나 장비를 제공함에 있어서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없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결국 EU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전체 유럽 역내 또는 그 일부에서의 유효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Airbus는 비행기 설계, 제조 및 판매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이며, SITA는 항공 운송 및 관련 산업에서 통신, IT 인프라 및 서비스를 구축·제공하는 기업이다.

2005. 1. 27. EU위원회

EU위원회, 화학제품 사업자들 간의 카르텔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 부과

EU위원회는 Akzo Nobel, Atofina(현재는 Arkema로 잘 알려져 있음) 및 Hoechst사에 대해 모노초산(Monochloroacetic Acid: 이하 MCAA) 카르텔에 참가한 혐의로 총 216.91백만 유로(한화 약 2천 9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MCAA는 세제, 접착제 및 식료품이나 의약품 또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보조제나 강화제에 이용되는 화학 용매이다.

이번 EU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수준은 카르텔에 참가한 사업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서 결정된 것이다. Atofina와 Hoechst에 부과한 과징금은 양사가 예전에 유사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Neelie Kroes 경쟁위원은 “EU위원회는 가격고정이나 시장분할을 묵과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사업자들이 단일시장을 그들 마음대로 분할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익이 침해되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카르

텔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과중한 금전적 부담을 지울 것이다. 사업자들이 EU 경쟁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우리는 이를 방지할 수 있을 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는 카

르텔 참여 기업 중 하나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신고자 면책 프로그램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았다.

EU위원회는 네덜란드의 Akzo Nobel, 프랑스의 Atofina(현재 Arkema), 독일의 Hoechst 및 Clariant(나중에 Hoechst의 MCAA 사업부문에 인수되었음) 등이 유럽 시장에서 카르텔 및 기타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유럽조약 제81조를 위반하여 MCAA 시장에서 시장분할과 가격고정행위를 했음을 밝혀냈다. 이 사업자들은 유럽 MCAA 시장의 90% 이상을 지배했으며, 1998년에 이 시장의 가치는 약 1억 2천 5백만 유로에 해당했다고 한다. 1984년부터 1999년까지 MCAA 제조업자들은 판매량과 고객을 할당했고, 가격 인상에 합의했으며, 카르텔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판매량과 판매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고, 카르텔이 확실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보상시스템에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르텔 참가자들은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고 카르텔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EU위원회는 이번 위법행위가 그 성질에 비추어볼 때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과징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당해 물품이 유럽경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위반의 기간, 개별 사업자들의 위반 정도, 전체 규모 및 과거 Atofina와 Hoechst가 유사한 위법행위를 했

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U위원회는 또한 면책 프로그램에 따라, 위원회에 카르텔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 증거를 제공한 Clariant에 대해서는 완전 면책을 해주었다. 그리고 Atofina와 Akzo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각각 40%와 25%의 책임 감경을 해주었다. 결국 위원회는 Akzo Nobel에게는 84.38백만 유로, Atofina에게는 58.5백만 유로, 그리고 Hoechst에 대해서는 74.03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5. 1. 19. EU위원회

EU위원회, 회원국에 에너지 시장 개방을 위한 조치 요청

가스 및 전기 지침에 따르면, 각 회원국 정부는 시장 개방을 위해 보다 나은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시장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최근 EU위원회가 발간한 전기 및 가스 시장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주요 결론이다.

“이 보고서는 시장 개방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지침들이 완전히 이행되는 경우에 의미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가스와 전기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드

는 것은 EU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고 Andris Piebalgs 에너지 위원은 말했다.

이 보고서는 많은 회원국들이 아직도 새로운 지침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까지 해놓았어야 할 과정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25개 회원국들 중 18개 회원국들은 지침의 시행을 위한 기한인 2004년 7월까지 조치를 완료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04년 10월부터 많은 위반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전기 및 가스)과 북유럽 국가들(전기)은 이미 소비자활동이 활발하게 일고 있으며, 그 결과 대체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개선 과정도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장애물 중의 하나가 회원국 시장들간의 통합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회원국들의 인프라간 접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운송(transmission) 시스템 사업자들의 독립이나 유통(distribution) 시스템 사업자들의 세분화가 아직 충분하지도 않다.

이렇듯 에너지 시장 개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은 지난 1995년과 비교하여 10~15% 하락했다. 그리고 시장 개방 정책이 시행된 아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대규모 고객들 중 25% 이상이 공급자를 교체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체율이 50%를 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체되는 공급자들은 다른 회원국의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다른 회원국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 미만이다.

위원회는 2005년에는 역내 전기 및 가스 시장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시장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가스 및 전기 역내 시장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위원회는 각 회원국 정부들과 규제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 및 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분석한 ‘벤치마킹’ 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예정이다.

2005. 1. 7. EU위원회

유럽위원회, 동물사료용 비타민 카르텔에 총 6,634만 유로의 제재금 부과

유럽위원회는 성장촉진, 사망률 저하 및 식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가금(家禽) 및 돼지의 사료용 첨가물로 사용되는 비타민 B4로 알려진 염화콜린(Choline Chloride) 시장에서 카르

텔을 함으로써 Akzo Nobel, BASF 및 UCB에 대하여 총 6,634만 유로의 제재금을 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거래처는 유럽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동물용 사료의 생산자이다. 제재금 수준은 가격유지 및 시장분할과 같은 카르텔 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유럽위원회의 결의를 확인한 것이다.

Neelie Kroes 경쟁담당 위원은 「유럽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있어 EU 단일시장의 이익이 카르텔 및 다른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부정되는 것을 정말 참을 수 없다. 우리는 물리적인 국경의 폐지 및 범유럽시장 창설의 이점이 약탈품을 중간에서 서로 나누는 기업에 의해 상실되고 있다는 것 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경쟁담당 위원으로서 카르텔과의 싸움이 최우선 사항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두고 싶다. 이 결정은 언행일치를 증명하는 것이다」고 진술했다.

감면제도의 체계에서 위원회에 대한 신고정보를 계기로 주의 깊은 심사 후, 위원회는 네덜란드의 Akzo Nobel, 독일의 BASF, 벨기에의 UCB, 미국의 Bio products와 DuCoa 및 캐나다의 Chinook이 EC 조약(제81조)에 위반하여 유럽경제 지역(EEA)에서의 염화콜린의 가격 유지를 공모하고, 시장을 분할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더욱이 당해 관계기업은 세계 및 EEA에 있어서 염화콜린 시장의 약 80%를 지배하고 있다. 연중 위반이

행해진 최후의 해였던 1997년에는 염화콜린 시장은 1억 8,000만 유로, EEA 시장에서는 5,000만 유로 이상에 상당하였다.

1992년부터 1994년 4월에 걸쳐, 북미 및 유럽에서의 염화콜린의 주요 생산자가 전세계에서 가격상승, 세계시장의 분할 및 경쟁상대의 조작을 위해 비밀리에 회합을 가졌다. 북미의 생산자는 유럽의 생산자를 북미 시장으로부터 철수하는 대신에 유럽 시장에서 철퇴하는 것에 동의했다. 1994년 3월부터 1998년 10월에 걸쳐서 유럽의 생산자는 회합을 거듭하고, EEA내의 특정 국내시장의 가격 및 가격의 상승에 대해 동의하고, 각각의 고객을 할당하고, EEA 전역에서의 점유율에 대해 동의하였다.

북미기업들은 1994년 4월에 위반에 참가하는 것을 멈춤으로서, 위원회에 의한 당해 기업에 대한 최초의 심사가 5년 이상 지난 후에 행해진 것 때문에 당해 기업은 제재금을 면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의 생산자에게는 제재금 부과에 대해 5년간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본 결정은 특히 북미기업이 향후 그러한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기 위해 당해 기업에도 송부되었다.

위원회는 그 성질 및 지리적 범위에서 본 건 위반을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EEA에서 본 제품의 시장가격, 위반기간, 위반에

있어서 각각의 기업의 중요도, 기업 규모 및 3사 각각이 심사에 협력을 하기 이전에 BASF가 유사한 위반에 대해 이미 위반이 인정된 것을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 Akzo Nobel 2,099만 유로
- BASF 3,497만 유로
- UCB 1,038만 유로

2004. 12. 9. 유럽위원회 발표문

영국

경쟁위원회, 맥주업자간의 사업부문 인수에 반대

영국 경쟁위원회는 Serviced Dispense Equipment Limited(이하 SDEL)사가 Coors Brewers Limited(이하 Coors)사의 생맥주 제공 장비 부문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이 기업결합이 생맥주 제조 및 관련 기술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감소시킬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 SDEL은 Scottish Courage Ltd.와 Carlsberg UK Ltd.가 합작하여 작년 초에 설립된 기업이다. 이 합작기업에 Coors의 생맥주 제공 및 관련 장비 부문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는 영국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이 2004년 9월 29일에 경쟁위원회에 통지함으로써 경쟁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었다.

현재 영국에는 14만 9천 개에 달하는 생맥주 제조업자들이 있으며,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생맥주 제공 장비 및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기술과 장비들에는 생맥주 저장 창고로부터 바(bar)에까지 전달하고 맥주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장비와 기술은 맥주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위원회 Paul Geroski 위원장은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판단하건 대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 사건은 생맥주 제공 장비 및 관련 기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시장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현재 경쟁이 몇몇 사업자들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맥주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맥주와 맥주 제공 장비 및 기술을 끓어서 판매하도록 한다면, 상당수의 고객(맥주판매업자)들은 맥주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만일 Coors의 맥주 제공 장비 및 기술 부문을 인수함으로써 SDEL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한다면, 이들 시장에서의 경쟁은 인수하기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될 것으로 경쟁 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2005. 1. 5. 경쟁위원회

일 본

공취위, 승합버스 사업자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피의사건 종결처리

공정취인위원회는 센다이시-야마가타시간의 고속버스 노선(이하 센다이-야마가타선)을 공동 운행하고 있는 승합버스 사업자 및 센다이시-후쿠시마시간의 고속버스 노선(이하 센다이-후쿠시마선)을 공동 운행하고 있는 승합버스 사업자에 대해, 운임 및 운행 횟수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경쟁업자에게 대항하고 있는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왔다. 그러나 이 사업자들이 자주적으로 센다이-야마가타선 및 센다이-후쿠시마선의 공동 운행에 관한 운영을 개선하였기 때문에 심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센다이-야마가타선의 공동 운행에 관하여 보면, 센다이-야마가타선을 공동 운행하고 있는 2사(이하 2사)는 각각 센다이시와 야마가타시에서 승합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센다이-야마가타선에서 각사가 발행한 승차권을 이용하여 승객은 2사가 운행하는 버스 중 어느 것이나 승차할 수 있도록 하여 운임 수입을 착권정산(着券精算)하는 방식으로 제휴하고 있다. 착권정산 방식이란 각사에서 수령한 승차권을 기준으로 각사의 운송 수입을 확정하도록 각 회

사간에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2사는 이러한 센다이-야마가타선의 공동 운행에 대해서 독점금지법 위반의 의혹이 일자, 운임의 설정, 회수권의 할인율, 운행 횟수 등은 각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운임의 설정, 회수권의 할인율, 운행 횟수 등에 대해 운수국에 인가신청·신고전에 2시간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으며, 각사의 운행 시각의 조정은 승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함으로써, 공동 운행에 있어서 운영의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종래 2사의 운행 횟수는 동일했지만 올해 1월에는 2사가 각각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시간대에 증편을 하여 운행 횟수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

한편 센다이-후쿠시마선의 공동 운행에 관해서 살펴보면, 센다이-후쿠시마선에서 공동 운행을 하고 있는 3사(이하 3사)는 센다이시 또는 후쿠시마시에서 승합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들은 센다이-후쿠시마선에서 3사의 운임 수입을 일단 풀(pool)한 다음에 각사의 운행 횟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사는 이러한 센다이-후쿠시마선의 공동 운행에 대해서, 각사가 발행한 승차권으로 승객이 3사가 운행하는 어느 버스에도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운임 수입을 착권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운임의 설정이나 회수권의 할인율, 운행 횟수 등은 각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

기로 했으며, 운임의 설정, 회수권의 할인율, 운행 횟수 등에 대해 운수국에 인가신청·신고전에 3시간에 미리 협의를 하지 않는 등의 공동 운행과 관련한 운영의 개선을 도모했다.

이처럼 승합버스 사업자들이 공동 운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각 노선에 있어서 비록 공동 운행의 방식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각 승합버스 사업자가 독자적인 할인 운임이나 서비스를 마련하여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심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승합버스 사업자가 운임, 운행 횟수 등에 대하여 정보교환을 하여 공동으로 경쟁업자에게 대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제3조(사적 독점 및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 위반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 취인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위해 고속버스의 공동 운행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하기로 했다.

2005. 2. 3.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하시모토 포밍 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권고

공정취인위원회는 하시모토 포밍 공업 주식회사(이하 하시모토 포밍)에 대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4조제1항제3호(하청 대금의 감액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권고 조치했다. 하시모토 포

밍은 그동안 반복해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모토 포밍은 요코하마시 토츠카구에 위치하고, 동 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제조를 하청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원가절감 활동의 일환으로서 단가인하 하기로 합의를 해준 하청 사업자에 대해, 단가인하의 합의 이전에 발주되었지만 일정한 기일 이후에 납입된 것에 대해서 새로이 합의한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였다. 이는 하청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해야 할 하청 대금으로부터 종래의 단가와 신단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하시모토 포밍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 사이의 지불시에 새로이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청 대금 중 지급하고 있지 않았던 금액(총액 610만 9,374엔)을 하청 사업자 17개사에 대해 조속히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향후 하청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하청 대금을 감액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하청 사업자에게 주지시킬 것과 동시에, 사내 체제의 정비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그 내용을 자사의 임원 및 종업원에게 철저히 알리도록 조치했다.

2005. 1. 27. 공정취인위원회

캐나다 정부와 경쟁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일본 정부는 헤세이 2002년 11월에 캐나다 정부와의 사이에 경쟁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위한 교섭 개시를 발표한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섭을 실시해 온 결과, 교섭 당사자 사이에 주요 내용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 협정에 예정되어 있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보

양 체결국의 경쟁당국은 타방 체결 국가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집행활동에 대해 통보한다.

(2) 협력

양 체결국의 경쟁당국은 스스로의 법령 및 중요한 이익과 정합적인 범위내에서, 타방 체결국의 경쟁당국에 대한 지원을 한다.

(3) 조정

양 체결국의 경쟁당국은 쌍방이 집행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활동의 조정을 검토한다.

(4) 집행활동의 요청(적극적 예방)

일방 체결국의 경쟁당국은 타방 체결국의 영역내의 반경쟁적 행위가 자국의 중요한 이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타방 체결국의

경쟁당국에 대해 적절한 집행활동을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중요한 이익의 고려(소극적 예상)

양 체결국 정부는 집행활동의 전단계에서 타방 체결국의 중요한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이 협정에 의해, 국제적인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양 체결국의 경쟁법 집행이 강화될 것이며, 일본과 캐나다 경쟁당국간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역외적용을 둘러싼 마찰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 1. 19. 공정취인위원회

오 주

ACCC, 카르텔과의 싸움을 보다 한층 강화

ACCC는 감면정책의 재검토, 전속 카르텔 탐색팀의 창설 및 정부기관이 정부조달에 있어서 카르텔 행위를 발견·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캠페인으로 카르텔과의 싸움을 보다 한층 강화하였다.

ACCC가 후원하는 시드니에서의 Cracking Cartel Conference 강연에서, ACCC의 Graeme Samuel 위원장은 교활하고 위험한 카르텔 행위와의 싸움은 ACCC의 집행 프로그램의 주요 우선사항이며, 「위원회는

현재 확인한 40건의 의심스러운 카르텔 중 21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가운데, 특히 5건은 소송중이고, 나머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최근 결론이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ACCC는 감면정책은 카르텔의 폭로에 매우 효과적인 인센티브였다고 믿고 있지만, 적은 1년의 경험을 토대로 그것을 개선시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ACCC는 감면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한 강화책을 기록한 토의자료를 공표했다. 거기에는 감면 신청자가 모든 사실을 개시하기 전에 카르텔의 상세한 일부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감면이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marker」의 승인, 감면을 기업과 개인에게 동시에 주는 것 및 비서면, 즉 구두에 의한 증거만의 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전문가에 의한 카르텔팀은 감면정책의 인식을 높이고, ACCC의 카르텔 심사와의 조정과 촉진을 위한 ACCC 와 외부의 카운터 파트(counter-part)와의 협동을 장려하며, 또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전략적인 심사 및 소송계획을 개발중이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카르텔의 탐지 및 조치를 늘리고 동시에 민첩하게 카르텔에 대하여 행동하기 위한 ACCC의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Samuel 위원장은 카르텔이 이익을 생산하는 주요 방법의 하나는 정부와 민간에 의한 구입계약이라고 언

급했다.

특히 정부조달은 카르텔 형성과 연속에 노출되어 있다. 왜냐하면 정부 계약에 있어서 필요로 되는 투명성에 의하여, 시장의 분할, 가격의 고정화 및 회원이 협정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카르텔측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 또는 조달관청은 카르텔과의 투쟁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

ACCC는 정부 및 민간 쌍방의 부문에 있어서 구입자 또는 조달관청에 대해 보다 나은 정보제공과 동기를 주는 캠페인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구입 또는 입찰의 책임자들은 어디로부터 주요 물품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구입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업계의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카르텔의 존재를 나타내는 행위를 인식하는데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카르텔을 어떻게 잘 탐지·보고할 지에 대해서 이러한 전문가와 협동하는 것은 우리가 카르텔 행위에 보다 빨리 경계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5일간에 걸쳐 ACCC 카르텔팀은 일련의 워크샵과 관계관청과의 고위층 회합을 실시하였다. 이곳에서는 30개국으로부터 100인 이상의 직원이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한 거래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카르텔의 탐지, 조사 및 소추에 맞는 협력의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공유하였다.

2004. 11. 24.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공표문